소속관서

제 0000-00000 호 0000.00.00.

수 신 : 귀하

제 목 : 관리미제사건 등록 통지서

귀하와 관련된 사건의 관리미제사건 등록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접 수 일 시		사 건 번 호	
관리미제사건 등록이유			
담 당 계 장	○○과 ○○계 경○ ○○○		☎ 000-000-0000

※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

○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(범죄피해자 보호법): 관할지방공소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

○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(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):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

○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(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)

- 각급법원에 신청,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

○ 가정폭력 · 성폭력 ·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구조

- 여성 긴급전화(국번없이 1366), 보건복지상담센터(국번없이 129) 등

○ 뺑소니·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제도(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):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(1544-0049)에 청구 가능

○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(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 · 출장소)

-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(손해배상청구,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)

○ 범죄피해자지원센터(국번없이 1577-1295): 피해자나 가족,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

○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: 국민신문고 www.epeople.go.kr,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

○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: www.humanrights.go.kr, 국번없이 1331

○ 수사 이의제기 제도(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, 담당 수사관 소속 경찰관서에 제기)

- 6개월 이상 수사지연, 사법경찰관리가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, 그 밖에 위법·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고소인 등은 이의제기할 수 있고, 소속 경찰관서의 장은 14일 이내에 수사관 교체 등 조치 가능

○ 시정조치요구 제도(형사소송법 제197조의3, 국번없이 1301)

-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,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음

○ 수사 심의신청 제도(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계)

-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,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에게 심의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. (단, ▵입건 전 조사,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▵증거 등의 허위·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에게 심의신청 가능)

※ 고소인·고발인은 형사사법포털(www.kics.go.kr)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관리미제사건

○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추가 단서 등 확보 시까지 수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.

소 속 관 서 장

210㎜ × 297㎜(백상지 80g/㎡)